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5955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진종삼, 정영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심우인

변론 종결 2019. 4. 17.

판결 선고 2019. 5. 22.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단7192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83,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D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2005. 11. 21.자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내부적 부담비율이 적용될 수 없고, 연대채무자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부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로 연대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 299,215,110원 중 관련판결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확정된 가산세 85,248,486원 부분을 제외한 본세 및 나머지 가산세 합계 213,966,624원 중에서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1/2 상당액인 106,983,31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부담비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한 내부적 부담비율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내부적 부담비율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지분 비율과 동일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부담비율이 연대채무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균등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11. 21.경 이 사건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모텔의 임대 수입과 경비 및 제세공과금의 분배 및 부담비율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피고와 D이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2005. 12. 1.경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당시 이 사건 계약서 이외에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하여진 내부비율과 동일하게 이 사건 모텔 운영에 따른 순이익금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3 상당을 분배받아 왔고, 필요경비에 대하여도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3 상당을 부담하여 왔다(이 사건 모텔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의 '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란에는 원고의 분배비율이 2/3에 해당하는 66.67%로, 피고의 분배비율이 1/3에 해당하는 33.3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는 비록 피고와 D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과된 것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부담비율을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것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⑤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는 총 운영수익금에서 매달 500만 원 및 각종 제세공과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위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이미 수익의 분배가 마쳐진 과거의 수입에 대해 부과된 세금인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누락한 위 수입과 위 부가가치세 본세를 고려하여 다시 순이익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부담비율의 확정을 통해 내부적인 구상금의 액수를 확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⑥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규정한 제세공과금의 일종임은 명백하나, 원고와 피고가 사후적으로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존에 분배받은 순이익금이 감소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와 같이 감소되는 순이익금 상당액의 부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순이익금의 분배 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 및 이 사건 동업약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2) 피고 부담 부분의 계산

원고가 피고와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 전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부가가치세 본세 177,431,558원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1/3 상당액인 59,143,852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부담비율 및 피고의 부담 부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숙박업으로 인하여 당연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본세와 달리 당시 이 사건 모텔의 영업 및 세금신고의무를 담당하였던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세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비용부담을 소유지분에 따라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데 쌍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내부적 부담비율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텔의营业을 담당하였던 피고의 세금신고의무 해태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의무를 발생하게 한 주된 과실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모텔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자로서 세금신고의무의 주체이기도 했던 원고로서는 소득의 정산과 신고가 실제발생한 금액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영을 위임받은 피고가 세금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한 잘못이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는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85,248,486원(= 121,783,552원 × 70%)상당이다.

2) 관련판결과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판결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121,783,552원 중 관련판결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된 85,248,486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36,535,066원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대납부의무자가 자신의 변제로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다른 의무자에 대하여 내부적 부담비율 상당액을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와, 가산세 납부의무를 발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관련판결의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 서로 간에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와 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양 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내에서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어느 한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다른 청구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관련판결 결과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이를 원고가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운데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이 관련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과 동일한 85,248,486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관련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 역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 판사 민성철